

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
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6.

발 의 자 : 한정애 · 조인철 · 권향엽  
한준호 · 강준현 · 김태년  
송옥주 · 김영배 · 김 윤  
염태영 · 김주영 · 김남근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댐용수의 여유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산업 대비 3~5배 많은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,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유치 및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.

이에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, 그 결과가 「수도법」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성장에 핵심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물의 전략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).



##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물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물을 배분하는 경우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「수도법」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